



“위험성평가”로
대형사고 및 사망재해 예방!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1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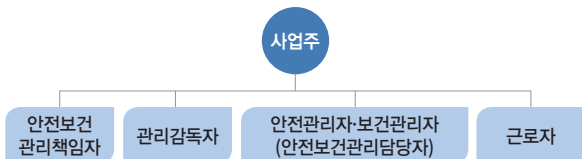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3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시

STEP

01

사전준비

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STEP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Hazards identification

STEP

03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STEP

04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STEP

05

허용 가능위험 여부

Yes

종료

남아있는 유해·위험정보의
게시, 주지 등

Recording

기록

No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 가능

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1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2 위험성평가의 시기는?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기록 및 보존 방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1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이란?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관리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수적인 콘텐츠를 인터넷 및 모바일 웹 기반으로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입니다.

(<http://kras.kosha.or.kr>)



▲ 홈페이지 접속 화면

▼ 모바일 웹 접속 화면

2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구성은?

▣ 위험성평가 실시

- » 위험성평가(5단계) 방법(743개 표준모델)
- » 체크리스트 방법(1,063개 표준모델)
- » 대화형 방법(32개 표준모델)

▣ 위험성평가 컨설팅, 평가담당자 교육, 인정심사(재해예방활동) 등

※ 위험성평가사업주 교육은 안전보건교육포털(<http://www.koshats.or.kr>)에서신청가능

▣ 위험성평가 가상체험(13개 업종) 및 업종별 사례(319개 업종)

▣ 모바일 웹 -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동영상 및 홍보자료 등(11종)





1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란?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으로, 전체 공정(작업) 중 일부 또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포인트를 중점 컨설팅 해드립니다.

2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대상은?

- ▶ **전 업종(건설업 제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 ▶ **건설업종** :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3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방법은?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당 매년 2회 신청 가능)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가능 (사업장회원으로 회원가입 시)

4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심사원이 현장방문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 대상은?

- ▶ **전 업종(건설업 제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 **건설업종**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6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가능 (사업장회원으로 회원가입 시)

7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 ▶ 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 지원(50인 미만) 및 실태심사비 면제
- ▶ 기술보증기금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 지원신청서”를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서 실시

※ 안전보건교육포털(<http://www.koshats.or.kr>)에서 신청 가능

2 평가담당자 교육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가능

▶ 민간교육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갈산동)	053-586-9300
(주)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19-1 2층 (주중동)	043-212-4611
(주)대한산업안전본부	대전 중구 보문로 310, 8층 801호 (선화동, 대제빌딩)	042-223-8500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구로구 공원로 70 (구로동)	02-860-7000
(사)대한안전교육협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6 701호 (관양동, W에이스타워)	070-4852-6226
(주)대한안전기술연구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95 602호 (고잔동, 궁전타워)	031-411-8410
(사)안전보건진흥원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52 3층 (독산동, 독산빌딩)	02-804-7900
산업훈련원(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 301호 (고잔동, 원원프라자)	031-483-9220
(주)우리안전기술원	전남 순천시 고지5길 3 501호 (가곡동, 동원빌딩)	061-742-1135
제일건설안전기술(주)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11호	02-2612-5530
한국산업안전컨설팅(주)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 118 (상도동)	054-253-3632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38 301호 (대림동, 이현빌딩)	02-2068-0390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산 강서구 대저로 294 (대저1동, 한국안전기술지원단 빌딩)	051-332-2114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903, 904, 905호 (원시동)	031-431-3122
한국표준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삼성동, DT센터)	02-6009-4552
(주)에이스직업전문학교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2 (대림동)	02-848-4020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79 4층 (서초동)	02-2046-0427
한국안전관리협회(주)	대전 유성구 반석로 10 604호 (반석동, 반석역프라자)	042-822-4118
(주)탐스윙교육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8 501호 (화정동, 광성프라자)	031-968-0037
(주)경남안전기술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5 3층 (팔용동)	055-273-7012
(주)나야넷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804호 (가산동)	02-6494-2010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구역	위험성평가 업무 담당자	위험성평가교육 업무 담당자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02-6711-2897	02-6711-2913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중랑구 및 노원구	02-3783-8322	02-3783-8315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815-1059	033-815-1058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033-820-2513	033-820-2552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15	051-520-0556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49	052-226-0515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055-269-0517	055-269-0513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5-371-7511	055-371-7502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062-949-8743	062-949-8714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8544	063-240-8523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063-460-3613	063-460-3626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061-288-8734	061-288-8723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51	061-689-4914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7	064-797-7504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48	032-510-0647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28-1953	031-828-1944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680-6543	032-680-6551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259-7137	031-259-7265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17	031-481-7556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031-785-3327	031-785-3340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053-609-0546	053-609-0576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053-650-6854	053-650-6814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054-478-8014	054-478-8053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64	054-271-2014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042-620-5652	042-620-5672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043-230-7125	043-230-7145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 및 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태안군	041-570-3435	041-570-3407